KOSHA GUIDE

T - 19 - 2020

화학물질의 고정용량법에 의한 급성경구독성시험 기술지침

2020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용 훈
-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성 배
- 제·개정 경과
 - 2015년 11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 - 2016년 10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 - 2017년 9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 - 2019년 11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 - 2020년 12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OECD Guideline for testing of chemicals(TG 420, Acute oral toxicity-Fixed dose procedure)(2001)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(유해인자의 분류기준)
 -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 및 관리)
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(유해인자의 분류기준) 별표 18
 - 국립환경과학원 고시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 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칙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0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화학물질의 고정용량법에 의한 급성경구독성시험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9조(유해인자의 관리 등), 제40조(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), 국립환경과학원고시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)에 따라 급성경구독성시험 항목에 대한 최신 시험법 (고정등급법)을 제시하여 시험동물의 사용수를 줄이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급성 영향 및 건강장해에 관한 독성시험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급성경구독성"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24시간 이내에 1회 또는 수회 경구투여한 후 단시간 내에 나타나는 유해영향(Adverse effects)을 말한다.
 - (나) "투여량(Dose)"이라 함은 투여하는 시험물질의 양을 말한다. 일반적으로 단위는 시험동물의 체중 당 시험물질의 무게(예, mg/kg)로 표시한다.
 - (다) "빈사 상태(Moribund state)"라 함은 시험물질의 독성에 의하여 시험동물이 죽어가는 상태 또는 생존할 가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.
 - (라) "GLP(Good Laboratory Practice)"이라 함은 유해위험성 실험실운영규정을 말한다.

- (마) "GHS(Globally Harmonized Classification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)"이라 함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 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시험계획서 작성

4.1 목적

독성등급법에 의한 급성경구독성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.

4.2 시험계획서 작성 시기

- (가) 시험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시험책임자로 지정되면 시험물질의 조제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.
- (나) 시험책임자는 시험계획서가 운영책임자에 의하여 승인되면, 실험동물윤리위원 회의심의 및 동물구입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.

4.2 시험계획서 작성방법

시험계획서에는 표지 및 시험개요. 시험세부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.

(가) 표지 및 시험개요

표지 및 시험개요에는 시험번호, 시험명, 작성일, 시험일정, 의뢰기관, 시험기관명, 각 시험부문별 확인 및 승인사항이 나타나도록 한다.

(나) 시험세부계획

시험세부계획에는 1. 시험목적, 2. 적용된 시험방법, 3. 사용된 시험계, 4. 동물사육환경, 5. 사료, 6. 음용수, 7. 시험물질 및 매체대조물질 8. 투여방법. 9. 시험항목, 10.

통계처리, 11. 보관될 기록 및 자료, 12. GLP 대응 및 신뢰성 보증, 13 참고문헌, 14. 첨부자료 등으로 구성한다.

5. 독성시험 수행

시험책임자는 작성된 시험계획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성시험을 수행한다.

5.1 시험의 준비

5.1.1 동물입수 준비

- (1) 시험책임자는 동물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동물실을 결정한다.
- (2) 동물관리책임자는 사용할 동물실의 환경, 청소 소독, 설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도록 준비한다.
- (3) 사용할 기자재가 완전히 갖추어 진 것을 확인한다.
- (4) 개체식별카드는 미리 작성하여 사육상자 전면에 부착한다.
- (5) 동물실 사용기록지를 작성하여 사용할 동물실의 전면에 부착한다.

5.1.2 실험동물

- (1) 연령이 8~12 주령 된 시험용 랫드(다른 설치류도 가능)를 사용하며 개체 간 체 중 차이는 평균체중의 ±20%를 넘지 않도록 한다.
- (2) 시험은 한쪽 성을 사용하는데 암컷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수컷을 사용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한다.
- (3) 암컷은 과거에 새끼를 낳은 적이 없고 현재 임신 중이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.
- (4) 시험에 사용할 개체는 시험 시작 전 최소 5 일 이상 실험실에서 순화시킨 건강 한 동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.

5.1.3 사육조건

- (1) 사육실은 온도가 22℃±3℃, 습도가 30~70%가 유지되도록 한다.
- (2) 사육은 암·수를 구별하여 실시하며 각 개체의 상태 관찰이 용이하도록 밀도가 높지 않도록 한다.
- (3) 조명은 인공조명으로 연속 12시간 간격으로 점등한다.
- (4) 사료는 물과 함께 일반 실험용 사료를 공급한다.

5.1.4 시험물질

- (1) 시험물질은 적당한 용매에 용해 또는 현탁시킨다. 시험물질은 수용성 액이 우선 적으로 권장되나, 비수용성인 물질의 경우 오일(예, corn oil) 또는 기타 다른 용 매를 사용하다.
- (2) 이때 사용하는 용매는 사전에 독성 여부와 특성이 잘 알려진 것을 사용한다.

5.2 시험방법

5.2.1 원리

- (1) 예비시험에서는 단일 성(가능한 암컷을 우선으로 함)의 동물을 사용하여 최소 치사량 및 용량-반응 관계 자료를 확보한다. 그리고는 본시험에서는 단일 성(가능한 암컷을 우선으로 함)의 동물을 사용하여 고정용량(5, 50, 300, 2,000 mg/kg) 대해 단계적으로 시험한다.
- (2) 시작 용량은 기존의 독성자료에 근거하여 선정하는데 사망과 같은 심각한 독성을 유발하지 않으나 그 외의 독성 증상이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용량으로 한다.
- (3) 시작 용량의 경과에 따라 다음 용량을 결정한 후 단계적으로 투여한다.

5.2.2 시험물질의 투여

- (1) 경구 투여하는 시험물질의 양은 실험동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, 일반적으로 최대 1 ml/100 g(체중)을 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수용액의 경우는 2 ml/100 g까지 허용한다.
- (2) 투여는 1 회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소량씩 나누어 실시하며, 투여 간격은 24 시간이 넘지 않도록 한다.
- (3) 시험물질을 투여하기 전날 저녁부터 물을 제외한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체중을 측정한다(마우스의 경우는 투여 전 3~4 시간 전부터 먹이 공급 중단).
- (4) 시험물질의 경구투여 후 3~4 시간 후(마우스의 경우는 1~2 시간 후)부터 먹이를 공급한다.
- (5) 시험물질을 소량씩 나누어 투여할 경우, 투여 간격을 고려하여 소량씩 여러 번물과 먹이를 적절히 제공한다.

5.2.3 예비시험

- (1) 시험물질 투여 후 적어도 14일 동안 관찰한다.
- (2) 예비시험의 시작 용량은 독성 증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용량으로 써 고정용량(5, 50, 300, 2,000 mg/kg)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한 마리씩 투여하고, 이때 나타난 결과를 통해 다른 농도에서 예비시험을 실시하거나 본 시험의 농도를 설정한다. 예비시험의 농도 선정은 시험물질 또는 시험물질과 관련이 있는 물질의 독성자료를 바탕으로 한다.
- (3) 시작 용량을 선정하기 위해서 해당 물질 또는 유사 물질의 독성정보가 없는 경우 처음에 300 mg/kg 용량으로 시작한다.
- (4) 만일 2,000 mg/kg 이상의 농도에서 시험동물이 사망하지 않는 경우 예비시험을 중단하고 본시험을 2,000 mg/kg에서 실시한다. 만일, 최소 고정용량인 5 mg/kg에서 처음 투여한 1 마리의 동물이 사망하면 시험을 중단하고 GHS 카테고리 1로 분류한다. 이때 이를 확실히 검증하려면 보완적인 시험도 실시하는데 이는 시험

자가 선택적으로 실시한다.

- (5) 보완시험의 경우, 두 번째 동물에 5 mg/kg을 투여하며, 이때 동물이 사망하면 GHS 카테고리 1 분류를 확정한다. 만약 생존할 경우 추가로 1 마리씩 일정한 시간 간격(앞서 투여한 동물의 생존이 확인된 후)을 두고 총 3마리를 5 mg/kg 용량으로 투여한다. 이때 2 마리 이상 사망할 경우 GHS 카테고리 1로 분류하며, 1 마리 이하 사망 시 카테고리 2로 분류한다(그림 1 참조).
- (6) 동물복지를 위하여 5,000 mg/kg 용량시험은 권장되고 있지 않으나,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적정 사유를 언급하여야 한다.

5.2.4 본시험

- (1) 각 시험용량에 대해 단일 성(암컷을 우선으로 함)인 5 마리를 시험동물로 사용한다. 이때 예비시험에 사용된 동물 1 마리를 5 마리에 포함시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한다(예비투여에서의 투여 용량이 본시험과 다른 경우는 제외).
- (2) 예비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용량을 시험동물에 투여하며 이때 나타난 독 성반응에 따라 카테고리를 분류한다.
- (3) 관찰기간은 일반적으로 14 일 실시하는데 관찰기간은 고정적이지는 않으며 독성 반응, 속도, 회복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(4) 관찰은 투여 후 30 분 이내에 적어도 한번 관찰하고, 특히 투여 후 처음 4 시간 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도록 한다. 이후 14 일까지 적어도 1회 이상 관찰한다.
- (5) 한계시험은 시험물질이 무독성일 가능성이 있을 때 수행될 수 있다. 2,000 mg/kg (특별한 경우 5,000 mg/kg)으로 시작되는 예비시험을 거친 후 동일 용량으로 추가 4 마리에 대해서 본 시험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(그림 2 참조).
- (6) 시험물질의 투여 후 시험동물의 증상(사망 또는 빈사상태)이 명확히 관찰된 경우.-다음 시험단계로 진행한다. 빈사 상태의 동물은 안락사 시킨다.
- (7) 독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간과 소멸되기 시작한 시간은 매우 중요하므로

모든 관찰은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, 개체별로 기록하여야 한다.

- (8) 관찰은 피부 및 털, 눈 및 점막, 호흡계, 순환계, 자율 및 중추신경계, 행동 유형을 포함한다. 특히 경련, 설사, 유연, 혼수상태 등의 증상은 유의하여 관찰한다.
- (9) 체중은 시험물질 투여 직전과 종료 후 부검 직전 측정하며, 시험기간 중에는 주 1 회 측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체중 변화를 계산하여 반드시 기록하도록 한다.
- (10) 시험 중 사망 및 빈사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험동물은 부검 후 소견을 기록한다. 필요시 부검 후 조직병리학적 관찰을 통한 소견을 기록한다.

5.2.5 시험상의 유의사항

- (1) 부식성이나 자극성이 큰 물질의 경우 시험동물에 고통을 주므로 되도록 시험을 피하도록 한다.
- (2) 시작농도 선택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시험동물의 수를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.
- (3) 시험동물이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할 경우 안락사 시키며 시험 중 사망한 동물로 처리한다.

6. 독성시험결과 및 보고

6.1 결과의 처리

시험용량, 시험동물 수, 독성증상을 보이는 시험동물 수, 시험기간 중 치사동물 수, 독성발현 및 시간, 용량-독성반응 관계, 부검결과 등을 기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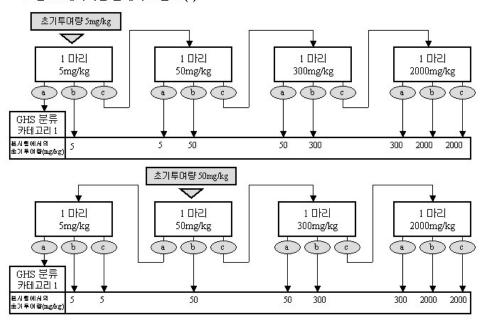
6.2 시험결과의 보고

시험보고서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.

- (1)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
- (2)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 성명
- (3) 시험동물 : 종, 시험동물의 수, 연령, 공급원, 사육조건, 각 개체의 사육 조건
- (4) 시험물질 : 물질명과 CAS 번호, 물리적 특성 및 순도, 시험과 관련된 물리화학적 특성, 시험물질의 안정성
- (5) 시험용매명 및 선정사유
- (6) 시험조건 : 시험기간, 투여용량 수준 및 횟수, 먹이공급 시기
- (7) 시험결과
 - (가) 용량별 독성반응 결과 : 사용 동물수, 체중변화, 사망 및 도살 동물수, 독성증 상을 보이는 동물 수, 피부, 털, 눈, 점막, 소화계, 호흡계, 순환계, 중추신경계 에 나타나는 독성증상(행동유형, 경련, 설사, 유연, 혼수상태 등)
- (나) 독성증상을 보이는 시간 및 회복 시간
- (다) 도살기준 및 근거
- (라) 부검 결과
- (마) 결과의 해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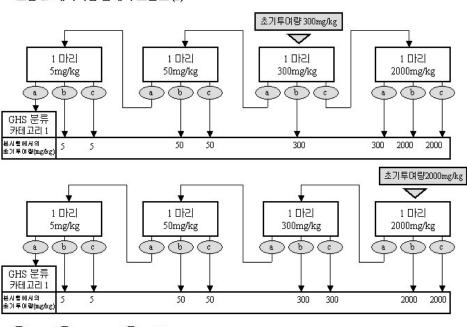
<부록 1> 예비시험 단계의 흐름도(1), (2)

그림 1. 예비시험 단계의 흐름도(1)



● 사망 ● 유의한 특성 ● 무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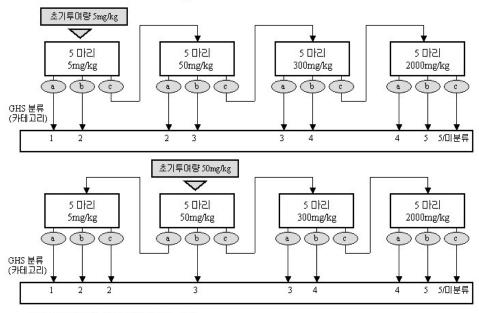
그림 1. 예비시험 단계의 흐름도(2)



● 사망
● 유의한 특성
● 무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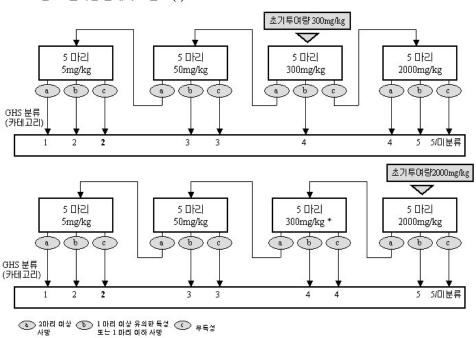
<부록 2> 본시험 단계의 흐름도(1), (2)

그림 2. 본시험 단계의 흐름도(1)



a 2마리 이상 b 1 마리 이상 유의한 특성 € 무특성 사망 또는 1 마리 이하 사망

그림 2. 본시험 단계의 흐름도 (2)



- 10 -